

GANGJIN 

# *Web Contents*



# 목차

목차	2
선정대리인제도	3
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란?	3
지원대상	3
지원절차	3

지방세 의의	지방세의 체계	구제제도	납세자 보호관제도
지방세 상담 전화 안내	지방세 납부방법	마을세무사제도	선정대리인제도

##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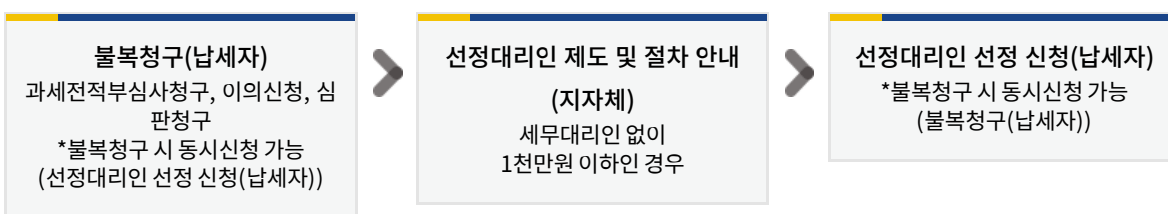
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,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(선정대리인)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.

※ 신청대상 불복청구 : 과세전적부심사청구, 이의신청, 심판청구

## 지원대상

구분	내용	
청구인 신청요건	종합소득금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5천만원 이하 *배우자 포함</li> </ul>
	소유재산가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5억원 이하(부동산·회원권·승용차) *배우자 포함</li> <li>평가방법 : 지방세법(제4조) 상 시가표준액</li> </ul>
	청구·신청세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천만원 이하</li> </ul>
	신청불가 세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담배소비세, 지방소비세, 레저세는 신청불가</li> </ul>
	법인 제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개인만 가능, 법인은 신청불가</li> </ul>
	고액·상습 체납자 제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출국금지대상* 및 명단공개대상**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·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</li> </ul>

## 지원절차



재산·소득 등 지원요건 검토, 접수일  
로부터 7일 이내 지정 통보

(선정대리인)

---

COPYRIGHT © GANGJIN-GUN. ALL RIGHT  
RESERVED.

GANGJIN

# ***Web Contents***

